

## 표절의 이해<sup>1)</sup>

이 준 용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1. 문제 제기: 세 가지 글쓰기 윤리 영역과 표절

학술 세계 밖에서 표절에 대한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회 명사나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에 대해 표절 시비가 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학술 윤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표절이 정치적 논란으로 전환되는 일이 빈번하다. 표절시비는 흔히 정당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때로 정적의 명성과 위신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어느덧 표절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정적의 약점을 들춰서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된 느낌이다. 그런데 나는 표절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가 대체로 심각한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표절이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절도’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 같다. 표절이란 ‘남의 생각을 훔치는 것’ 또는 ‘남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빌려 쓴 후 갚지 않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과렴치하다는 것이다. 표절이 진정 훔치고, 무단히 빌리고, 빼앗는 행위라면, 과연 이런 일을 저지른 자를 좋게 볼 수 없겠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 법대 교수인 포스너(Posner, 2007/2008, p. 36)는 표절을 절도로 보는 통념이 오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도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사회에서 표절에 대한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이 표절과 인접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포스너마저도 표절의 개념을 부당하게 좁게 규정하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든 혐의가 있다.

표절은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윤리 영역에서 미묘한 위치에서 처해 있다.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윤리 강령은 표절을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표절 개념을 미리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제시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표절이라 불리는 행위의 윤리적 중요성과 행위의 광범위함에 비하여, 그 개념 규정과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빈약하다. 나는 이런 현실 역시 표절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표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흔히 그것은 훔치거나 무단히 빌리는 행위로 오인되는가? 훔치거나 무단히 빌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표절은 무엇이란 말인가? 흔히 언급되는 ‘자기 표절’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표절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쓰였다. 나는 글쓰기와 관련된 세 가지 윤리적 기준, 즉 (1) 다른 저자의 이익 침해 금지, (2) 독자에 대한 진정성(sincerity), (3) 자신에 대한 본원성(authenticity) 등 개념들을 동원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요컨대 저자는 다른 저자의

---

1) (2013년 3월 원고) 이 글은 2009년 6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콜로퀴엄(회관홀)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2009년 가을부터 매 학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특강에서 <표절과 의사소통 윤리: 진정성, 본원성, 그리고 타인의 이익 침해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초고를 2012년 5월 25일 한국연구재단 후원 서울대학교 연구처 주최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표절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을 주신 많은 학생들과 <연구윤리 심포지엄> 참석자 및 기타 발표 자리에서 논평과 제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며, 예상된 독자를 속이면 안 되며, 자신의 출신과 배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원칙은 글쓰기를 의사소통 과정으로 보고 소통 행위자가 다른 소통 행위자, 수신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 유념해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개념화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원칙이 표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제시하겠다.

이 글의 첫 번째 주장은 표절이란 ‘예상된 저자에 대한 저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개념인데, 이를 윤리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 특히 ‘다른 저자의 이익 침해 금지’와 관련해서 접근할 때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글쓰기에서 제기되는 ‘다른 저자의 이익 침해 금지’의 문제는 주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타인의 법익 침해에 대한 것이다. 현실에서 이 문제는 흔히 ‘예상된 독자에 대한 저자의 진정성’ 문제와 결합해서 발생하지만,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것이며 법적, 윤리적 함의도 다르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 나는 표절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가 이 두 윤리 영역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발생한다는 것을 제시하겠다.

이 글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장은 표절이 저자의 본원성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남의 글을 훔치면 안 된다’거나 ‘언제나 솔직하게 인용하면 된다’는 식의 진부한 격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글을 쓰는 저자는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까닭에 그는 쉽게 표절의 유혹에 굴복하게 된다. 글쓰기에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 표절을 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라도 표절 문제가 대학과 연구기관과 같은 학술 공동체의 윤리적 문제로 제한될 수 없고, 모든 창작하는 주체의 도덕성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의 후반부는 이런 생각이 갖는 윤리적 함의를 다룬다.

## 2. 다른 저자의 이익 침해와 표절

글쓰기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중에 다른 저자의 이익과 관련된다. 요컨대 어떤 저자라도 다른 저자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윤리적 요구이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을 동반한다. 저작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저작권은 지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창작물을 사용할 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저작권법에 따라 어떤 저자라도 다른 저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되겠다. 그런데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현실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지만, 서로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이 절의 요지다. 이 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저작권은 ‘저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일이다. 또한 때로 표절은 저작 인격권 침해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저작 인격권 침해 역시 표절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제시하겠다.

### 1) 복제와 창의성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 핵심 개념은 역시 ‘복제’다. 원작의 복제 없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가 다른 저자의 글을 복제함으로써

그 저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흥미롭게도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타당하게도), 저작권은 창작물에 표현된 ‘생각 그 자체’의 복제를 금하지 않는다(Holsinger & Dilts, 1994, p. 584). 다만 어떤 창작물의 표상을 이루는 ‘표현’을 보호할 뿐이다. 이른바 ‘생각과 표현의 이분법’(the idea-expression dichotomy)이란 원칙은 저작권과 관련된 복제가 표현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만들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정상조, 2003).

예를 들어, <다빈치 코드>로 유명한 댄 브라운은 그 책의 내용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적 있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남겼다는 주제가 사실은 미리 출판된 다른 저작의 내용과 유사하며, 따라서 생각을 복제한 것이며,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을 비롯한 일련의 주제적 내용에 대한 ‘표현된 내용’을 복제하거나 도용할 수 있을지언정 그 ‘표현이 표상하는 생각 그 자체’를 복제하거나 훔칠 수는 없는 일이다. ‘생각을 표상한 것’이 아닌 ‘생각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복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소송을 제기한 작가의 작품과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른 저작물의 표현을 복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Posner, 2007/2008, p. 37).<sup>2)</sup>

생각이 아닌 표현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다. ‘단순 사실의 복제’가 그러하다(Holsinger & Dilts, 1994, p. 583). 예컨대 태양계에 대한 논문에서 행성의 움직임과 위치에 대한 서술이나 중중반정에 대한 소설에서 이미 알려진 연산군의 행적에 대한 서술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저자가 최소한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가치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표현에는 저자의 창의성이 제한적으로 투입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sup>3)</sup> 결국 저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는 단순한 생산 관련성이 아니라 저자의 저작물에 대한 창의적 기여에 기초한 관련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저작권이 보호하려는 것은 저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창의적 기여 행위’다.<sup>4)</sup>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 목적이 원작자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는 ‘문화의 향상발전’을 명시적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저작권법 조항인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 역시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sup>5)</sup> 저작권법에서 원작자의 권

2) 때로 생각과 표현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한 컴퓨터 언어로 제시된 알고리즘의 경우 생각과 표현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되어 있기에 표현을 분리해서 따로 보호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적용하는 판단의 원칙을 결합의 원칙(the merger doctrine)이라 한다 (정상조, 2003).

3) 혹은 불가피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를 서술하면서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필수장면(scene a faire)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 묘사할 때에 창의적 표현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나치의 행사에 대한 서술에 ‘하일 히틀러’란 표현이 빠질 수 없으며, 중중반정에 대한 소설에 연산군의 성품에 대한 묘사가 빠지기 어렵다. 이런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원칙을 ‘필수장면원칙(the scene a faire doctrine)’이라 한다. 유사한 원칙으로 ‘사실상 표준원칙(the de facto standards doctrine)’이 있다. 이는 원저자의 창작물이 해당 분야의 표준적인 생각이 되어 후발 저자들이 그 표준적 생각을 기반으로 삼지 않고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한다 (정상조, 2003). 사실상 표준원칙과 필수장면원칙은 모두 저작권이 보호되기 위한 전제가 곧 원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창의적 기여라는 점을 강조한다.

4) 대법원 제1부 1993.6.8 선고 93다3073.3080 중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5)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의 해당 조문은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리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흔히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공표, 양도, 판매 등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잠재적 작가들이 더 많은 저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따라서 더 많은 창작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설정되어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의 생산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저자 인센티브 논지라 부른다.

이와 약간 다른 경제학적 논지도 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작권자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저작물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생산과 유통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모든 잠재적 권리자의 이익’과 ‘무임승차자의 효율적 배제’를 통한 정보시장의 작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Netanel, 1999). 저자 인센티브 논지와 경제학적 논지는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함의를 갖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별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유도되는지, 또는 저작권이 철저히 보호되는 시장이 그렇지 않은 체계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는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요점은 그 논지가 무엇이든 간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이익보호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다룬다. 바로 이 마지막 논점이 표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저작권이 보호하려는 ‘더 중요한 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2) 면책의 범위

저작권이 보호하는 이익을 이해하기 위해 ‘저작권 면책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종류의 원고, 뉴스레터,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은 70년간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나 저작권이 주장된 저작물이라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fair use)’ 또는 ‘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염려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 상생협약체가 제안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정이용이 인정된다.<sup>6)</sup>

- (가) 국가기관의 법령, 판결 등 공공저작물과 재판절차, 입법 및 행정 목적의 이용
- (나) 교육목적의 교과용 도서의 게재,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이용
- (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이용
- (라)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인용
-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 (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사) 도서관에서 저작물의 이용
- (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등

---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라고 제시한다.

6) 공정이용과 관련된 조항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2관 지적재산권의 제한 중 제 22조부터 제35조까지 저작권이 제한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제35조의3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서는 명시적으로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공정이용 목록을 보면, 창작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이 유보되는 상황이 많으며 그 대상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보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도 용인한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이익 보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이용에 따라 저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경우는 특히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특히 상업적인지 아니면 비상업적인 교육적 목적인지), (2) 저작물의 본성, (3) 이용의 정도, (4) 이용에 따른 저작물의 가치와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위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공정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면책은 일반적으로 비상업적인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미 공표된 뉴스 등 사실에 대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이용하는 내용의 양과 실체성이 제한되고, 공정이용을 통해서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우 등이 된다(Hoslinger & Dilts, 1994, p. 586).

공정이용은 표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저자가 공정이용에 의거하여 다른 저자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술적 목적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비상업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 공정이용에 따라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표절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다. 공정이용이라고 할지라도 예정된 독자 또는 청중에게 이용한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역시 표절이 된다. 요컨대, 표절의 판단 여부는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을 규정하는 기준과도 다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적 계약을 통해서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완전히 양도받은 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해당 원고를 출판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표절이 될 수 있다.

### 3)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별성

저작권은 저자가 저작물을 산출하는 순간 자동 발생한다. 이는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그런데 대륙법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을 포괄하는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sup>7)</sup> 즉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고, 저작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저작권이 저작인격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때로 저작권 침해는 사실상 표절과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어떤 저자가 다른 저자의 원고를 무단히 베껴서 출판하면 표절이자 동시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과 더불어 저작인격권 개념이 확대되면서 표절의 문제는 점차 저작권법의 범의 내로 포섭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논평

---

7) 나라마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독일에서 저작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과 긴밀히 연관되어 논의되지만, 실은 일반 인격권과 구분되는 '저작자가 자신의 창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된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구체화된 인격권"의 대접을 받는다. 프랑스에서 저작권이란 저자 정신의 체화물, 즉 분신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으로서 기능한다. 영미법의 전통에서는 저작권은 '침해 가능한' 재산권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서 그에 대한 침해는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의 위반(breach of statutory duty)'로 이해된다(이일호, 김기홍, 2009).

도 제기된 바 있다 (이일호, 김기홍, 2009). 그러나 저작인격권 침해와 표절은 하나의 행위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역시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저작권 침해는 원저작자의 이익 침해에 대한 문제이지만, 표절은 주로 예상된 독자의 저작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자에서 위반된 규범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이라는 법적이며 윤리적인 명제이지만, 후자에서 위반된 규범은 ‘예상된 독자의 저작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지 말 것’이라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명제이다. 요컨대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적용되는 윤리 영역이 다르기에 구분된다.<sup>8)</sup>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저절로 표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서 표절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실에서 저작권의 침해나 표절이 이루어질 경우,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에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 3. 표절의 개념과 판정의 원칙

이 절에서는 표절을 ‘진정성 위반’으로 정의해서 제시하고, 그 정의에 따라 표절을 판정하는 4 가지 원칙을 도출해서 제시하겠다. 나는 ‘자기 표절’이란 개념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데, 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표절 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에 여기에서 그 요점을 제시하려 한다. ‘풀어쓰기(paraphrasing)’는 표절과 관련해서 가장 오해를 사는 개념 중 하나이다. 풀어쓰기를 하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는데, 이 절에서 왜 그러한지,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논의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모두 표절 판정을 위한 주요 원칙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1) 진정한 소통

진정성(sincerity)은 마음의 진실성 또는 충실성(truthfulness)과 관련된다. 진정한 생각이란 자신이 그렇다고 충실하게 믿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정성은 소통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다. 즉 상대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 진정성이다.<sup>9)</sup> 진정한 말하기란 자신이 그렇다고 충실하게 믿는 바를 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가 말하는 바가 내 믿음을 충실히 반영하면 진정한 발언이 된다. 이런 의미의 진정성을 ‘말하는 자의 신념과 표현의 동일성’이라고 부르자.

일반적으로 진정성은 말하는 자의 신념과 표현의 동일성에 적용되지만, 말하는 자의 정체성의 동일성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8) 남형두(2009)는 저작권침해는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파악되지만, 표절은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규정된 윤리에 따라 피표절자의 저술이 보호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둘을 구분한다. 저작권 침해는 주로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고 (물론 인격권 침해도 포함하지만), 표절은 윤리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과 표절의 관련성과 차이성을 정당하게 포착하고 있지만 역시 모호한 점을 남긴다. 가령 그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 간의 관계가 마치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와 같다고 하는데, 이런 비유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무엇을 위반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기에 구분되는지 이해하게 만든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와 표절 방지는 같은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즉 법과 윤리로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9)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지 말자’ 또는 ‘자신에 대해 진정해야 한다’는 명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표현은 일인칭 반성을 대화적 소통으로 전환해서 이해하려는 일종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개인의 다짐, 성찰, 의무 등에 적용가능하다. 다짐을 예로 들면, ‘다짐하는 자아’와 ‘그 다짐을 확인하는 또 다른 자아’ 간의 대화적 소통이란 은유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거짓으로 다짐하지 말자’고 표현할 수 있겠다. 요컨대 ‘스스로 속이지 말자’는 명제는 분리된 자아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도입해야만 가능하다.

가 아닌 다른 어떤 빙의된 존재가 말을 옮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복화술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어떤 이가 타인의 협박에 의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인터넷 토론방 같은 익명적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글을 쓰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정체성의 동일성’에 대한 기대가 위반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진정성 위반이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소통하는 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동시에 본원성(authenticity)이란 개념과 얽혀서 복잡한 사정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서는 일단 소통하는 자의 동일성 위반도 넓은 의미에서 진정성 위반에 속함을 지적하고 싶다.

흥미롭게도 진정성이란 실제 소통 상황에서 진정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지만(즉 소통하는 주체가 과연 진심을 말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명백한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다른 별도의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자들은 일단 상대방이 그 자신의 생각에 충실하게, 즉 진심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소통’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면, 진정성이란 명백한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 한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되는 것으로서, 모든 일상적 소통이나 적용되는 소통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하지 않은 소통이란 엄밀하게 말하자면 진정할 것이란 기대가 어겨진 소통임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상대방이 진정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 놀라게 되며 심하면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상대방을 얼마나 비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맥락에 따라 규범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귀책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실은 그라이스(Grice, 1975)가 규정한, 소통 행위에 가정된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소통의 행위라도 일차적으로 그 소통에 참여하는 자들의 소통 목적에 합당한 말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런 원리에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격률(maxim)이 바로 ‘거짓이라고 믿는 바를 말하지 말라’, 즉 진정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이 격률은 모든 소통 행위에 가정되는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실제 소통행위에서 이 격률은 얼마든지 위반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자주 그러하다. 그리고 바로 그 위반을 통해서 반어법, 유머, 거짓말 등과 같은 의미 산출이 가능하다. 진정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대한 위반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요컨대, 진정성에 대한 기대란 도덕이나 윤리적 명령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모든 소통이 합목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요청되는 기본 가정이다. 이 진정성 개념을 토대로 표절을 규정할 수 있다.

## 2) 표절의 정의

표절이란 다른 저자의 내용을 가져다 씌으로써 독자가 다른 저자의 내용을 그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글쓰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훔치기 때문에, 즉 창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문제는 저작권 위반을 통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속한다. 표절은 예정된 독자가 기대하는 바를 어기는 저자의 행위이다. 앞서 논의한 진정성 개념을 적용시켜 말하자면, ‘저자가 글 쓴 바가 다른 누구의 생각이 아닌 바로 저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표절이 가능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독자의 기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자'에 대해 생각해 보자. 표절에 고려해야 할 독자는 실제 독자가 아니라 '예상된 독자'이다. 즉 사실은 아무도 읽지 않은 논문이나 시라고 할지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저자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겨냥해서 글을 쓰는 순간 '예상된 독자'에 대한 진정성 유지가 도덕적으로 요구되며, 이 요구가 글 쓰는 순간 충족되지 않는다면 표절이 된다. 그렇다면 '기대'란 어떤 기대인가? 바로 '다른 누구의 생각이 아닌 바로 그 저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즉 저자 생각의 고유함이 기대되는 내용의 본질이다. 그리고 '모든 저자는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는 기대는 저자의 독창성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결국 표절을 문제 삼는 사회란 저술의 고유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이며, 저자는 모름지기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회이다. 고유함과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에서 표절 자체가 문제될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상된 독자들이 저술의 고유함을 요구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조건에서라면 표절이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교재의 저술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을 정리해서 제시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주장을 언급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표절이 문제되지 않는다. 교과서나 판결문의 내용이 '저자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Posner, 2007/2008, p. 45; cf. Gibaldi, 2003, p. 66). 패러디의 경우에도 표절이 적용되지 않는다. 패러디란 원작의 내용을 원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본질인데, 패러디를 의도한 저자의 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원작자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패러디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야 한다. 즉 패러디는 패러디 저자의 고유한 생각이 더해지는 경우이기에 표절이라 보기 어렵게 된다.

포즈너(Posner, 2007/2008, pp. 55-56)는 표절을 '비합의적 사기성 복제(nonconsensual fraudulent copying)'라고 정의하고, (1)독자가 복제한 내용을 저자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2)이를 통해서 원저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표절이라고 규정한다. 포즈너의 정의는 일단 표절이 일종의 절도가 아니라 일종의 기만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 공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가 제시한 두 번째 표절의 조건은 과도한 것이다. 원저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표절의 필수적 구성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포즈너를 따르면, 원저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표절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어떤 학생이 위키피디아 등과 같은 사이트의 내용을 다운받아 보고서를 꾸며서 제출하는 행위가 표절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이어진다. 또는 리포트 공장에서 내용을 가져와 숙제를 하는 경우도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포즈너는 이런 사례가 일종의 '학문적 사기'일 뿐,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Posner, 2007/2008, p. 56). 이 경우 원저자를 규정하기 어렵고, 규정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한 피해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즈너의 시각을 적용시켜서 말하자면, 모든 '자기 표절'은 원저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이런 포즈너의 생각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포즈너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즉 원저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표절이 된다고 본다. 표절은 근대 이후 작가들, 특히 낭만주의 시대 작가들이 추구한 저술의 고유함 그리고 저자의 독창성이란 개념을 배경으로 성립한다. 근대 이후 저자들은 다른 누구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만의 목소리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

를 명백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결과 누가 피해를 입든 관계없이 표절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수가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한 경우, 그 학생을 인용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공저자로 간주하지 않으면 표절이다. 학생이 그 교수를 존경해서 자신의 보고서가 교수의 논문에 활용될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자신의 보고서를 교수에게 가져다 바쳤다고 할지라도 표절이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교수는 예상된 독자에게 그 작품의 진정한 저자가 학생이 아닌 자신이라고 오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대되는 진정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저자에게 피해가 없고 영광이 돌아가더라도, 예상된 독자가 갖는 진정성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표절로 보아야 한다. 이런 해석이 표절에 대한 상식적 반응과도 조응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표절의 요점은 저자와 원저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 독자의 관계에 있다. 글 쓰는 순간에 ‘이 글은 글의 저자로 밝혀진 바로 그 자의 고유한 생각을 담은 것이며, 그것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기대’를 갖는 주체인 예상된 독자가 구성된다. 이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글을 쓰는 순간 표절이 성립한다.

### 3) 이른바 ‘자기 표절’의 문제

‘자기표절’이란 표현이 사용되어 논란이 된다. 이 표현을 검토함으로써 표절의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에 여기에서 검토해 보겠다. 흔히 자기표절이란 한 저자가 어떤 시점에 독창적으로 저술한 내용을 이후 다른 시점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자명하지 않다. 이른바 ‘자기 표절’이 개념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저자의 저술행위는 항상 고유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전제가 위반할 때 표절로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전제는 누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전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독창성은 분명 칭찬받아야 할 미덕이지만, 모든 저자가 ‘항상’ 실현할 수 있는 미덕은 아니기 때문이다. 글쓰기와 관련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근대 낭만주의 이후의 저자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불가능하고 누구의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개성’을 추구했으며, 이런 저자의 개성이 발현된 작품의 고유함을 추구해 왔다. 낭만주의 이후 이른바 ‘작가 공동체’는 독창적인 저자에 대해 존경을 보내며 명성을 부여했다. 나는 독창성(originality)은 창조성(creativity)과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또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창조적이지 않으면 독창적일 수 없다. 창조성, 즉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인간과 신에 부여된 권능으로서 그것을 보는 이들의 존경과 경탄의 대상이 되는 최고의 덕성 중의 하나이다. 한 저자가 지속적으로 창조적일 경우 존경과 경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창조적인 저자가 독창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독창성을 ‘남과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 그 개념 자체는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독창적 행위를 현실에서 보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특히 어떤 이의 일련의 행위가 독창적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단 ‘남과 다른 행위를 산출하는 능력’이 발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의 행위’를 검토해야 하는 데, 과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또한 과연 문제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얼마나 달라야 ‘진정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짜 심각한 질문은 과연 독창성이 한 작가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항상 실현될 수 있는 미

덕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어떤 저자가 일생의 어느 시점에 창의적이어서 고유한 기여를 함으로써 존경과 경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언정, 그가 항상 창의적이지 못했다고 해서, 즉 ‘과거의 그 자신으로부터 독창적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정적으로 나는 ‘독창성의 저술 문화’가 염려하고 보호하려는 대상은 ‘고유한 기여를 하는 창작물을 생산하는 창의적 개인’이지 ‘특정한 시점의 창작 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본다.<sup>10)</sup> 즉 어떤 개인이 창의적일 수 있고, 그래서 한 개인이 창의적이면 좋으며, 따라서 그런 개인과 그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의 창작 행위 자체가 항상 독창적이어야 함을 요구할 수 없다.<sup>11)</sup> 왜냐하면 이는 명백히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저자는 항상 새로운 것을 써야 하거나, 아니면 단 하나의 작품만 쓰는 편이 낫다. 독창성과 관련된 이 요점을 이해하면 이른바 ‘자기 표절’과 관련된 많은 오해를 쉽게 풀 수 있다.

흔히 하나의 논문을 이 학술지와 저 학술지에 동시에 게재하는 경우 또는 한 논문의 내용을 다른 논문에서 활용하는 경우 등을 일러 ‘자기 표절’이라 부른다. 자신을 표절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나는 이를 ‘이중 게재’ 또는 ‘무리한 활용’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중 게재’와 ‘무리한 활용’로 규정하더라도 학술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 표절과 구분되기에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다.

이중게재를 규제할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 규제할 일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중 게재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알았다면 게재하지 않았겠지만) 모르고 중복으로 게재한 학술지’이지 다른 누구도 아니다. 이중 게재의 확인과 윤리적 위반의 판정 여부는 따라서 관련된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다. 드물지 않게,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중게재를 초청하거나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실거나, 한 분야의 논문을 다른 분야에 소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일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반면 무리한 활용은 출판 및 논문 작성의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자를 평가하는 데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다. 무리한 활용을 통해서 연구업적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받았다면 일단 이는 학술 공동체 내에서 비난 받을 만한 일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그렇게 평가 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승진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분명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인 무효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학술 공동체의 규범에 근거해서 규제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표절’이라서 비난 받을 일은 아닌 것이다.

#### 4) ‘풀어쓰기도 표절이다’

표절과 관련한 가장 흔한 오해는 다른 저작의 표현을 복제하면 표절이지만, 해당 표현을

10) 저작권 보호는 일반적으로 창의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의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을 대조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11) 독창적 표현이 곧 고유한 기여의 내용이 되는 예술 분야에 이 문제를 적용해 보면 자명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끌로드 모네의 그림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해서 모네를 ‘자기표절’ 작가로 비난하지는 않는다.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이 갖는 고유함이란 그의 모든 피아노 작품이 제 각기 독창적이라는 데 있다기보다 드뷔시의 작품이 다른 작곡가의 작품과 구분되는 독창성을 갖는다는 데 있다.

풀어쓰기(paraphrasing) 또는 표현만 바뀌서 옮기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포스너(Posner, 2007/2008)가 그의 저서에서 예시한 하버드 대학의 비스와나탄 사례를 보면, 표절은 다른 이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복제’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이 사실상 같은데 표현만 바꾸어 쓰더라도 내용의 전체적인 요지와 구성이 다른 저자의 요지와 구성과 같으면 표절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인 비스와나탄 소설의 도입부를 보자.

프리실라는 나와 동갑이었으며 두 블록 떨어져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내 인생의 첫 십 오 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영재를 위한 놀이반에서 함께 주판에 빠져들면서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프리실라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안경을 벗고 연달아 남자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기 전의 일이다. (Priscilla was my age and lived two blocks away. For the first fifteen years of my life, those were the only qualifications I needed in a best friend. We had first bonded over our mutual fascination with the abacus in a playgroup for gifted kids. But that was before freshman year, when Priscilla's glasses came off, and the first in a long string of boyfriends got on.)

비스와나탄은 처음에는 표절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나중에는 원작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했다’고 변명했다. 결국 그의 소설은 맥카퍼티의 2001년 소설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받았다(Posner, 2007/2008, p. 28). 그리고 출판사는 비스와나탄과 맺은 모든 계약을 취소했다. 다음은 맥카퍼티의 원작 소설이다. 비스와나탄이 맥카퍼티의 문장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원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제외한다면 해당 소설에서 독창성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별로 남는 것이 없다.

브리짓 동갑이고 바로 길 건너에 살았다. 이것으로 그녀는 내 인생의 첫 십 이년 간 가장 친구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는 브리짓이 교정기를 벗고 남자친구인 벅을 사귀게 되고, 나도 중학교 우등반에서 호프를 만나기 전의 일이었다. (Bridget is my age and lives across the street. For the first twelve years of my life, these qualifications were all I needed in a best friend. But that was before Bridget's braces came off and her boyfriend Burke got on, before Hope and I met in our seventh-grade honors classes.)

연구윤리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한 지발디(Gibaldi, 2003, p. 71)와 립슨(Lipson, 2004/2008, p. 77) 역시 다른 이의 문장이나 논변의 전개를 풀어쓰는 것도 표절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로 인용을 통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모든 글은 저자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된다. 남의 저작의 내용을 옮길 경우, 비록 그 내용을 문장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닐지라도 원저자의 내용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셈이 되기에 표절이 된다.

풀어쓰거나 바뀌서 쓰면 표절이 아니라는 오해는 역시 ‘표현의 복제’만 범하지 않으면 표절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되는 ‘표현의 복제’ 여부를 독자에 대한 진정성 위반 여부와 착각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표현의 단순 복제가 아니더라도 독자가 기대하는 저작물의 고유성에 대한 기대가 배반될 경우 표절이다. 따라서 ‘생각의 복제’ 문제는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더라도, 표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다.

풀어쓰기도 표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표절과 관련해서 흔히 제기되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복제해야 표절인가?’라는 질문은 요점을 잃은 질문임을 알 수 있다. 즉 몇 문장을 베껴 썼는지, 몇 문단을 베껴 썼는지, 몇 쪽을 복제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표절의 관심사가 아니다. 내용적으로 저자가 원작자의 생각을 인용 없이 옮겨다 쓴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옮겨다 썼는지는 상관없이 표절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저작권 침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복제 했나’가 별도의 고려사항이 된다.

## 5) 표절의 판정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된 표절 사례를 보면 따로 전문적인 판정을 내릴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표절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도저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이 많은 분량의 글이 인용 없이 반복되는 경우, 다른 여러 저자의 글을 짜깁기해서 하나의 글을 만들어 발표한 경우, 다른 연구자가 발굴한 역사적 자료나 다른 연구자의 실험 결과를 인용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표절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전체 표절 사례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범해진 표절이 모두 드러나는 것도 아니며, 드러난다 하더라도 표절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작자의 고발이 있거나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적발된 경우에도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표절 판정에 적용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면, 첫 번째 원칙은 역시 ‘진정성 기대의 충족’ 원칙이다. 즉 저작물의 내용이 그 저작물에 명시된 저자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며 그것은 다른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는 독자의 기대를 충족한다면 표절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에서 도출된 보조 원칙으로 표절을 표절이 아닌 다른 도덕적 일탈(내용의 위조, 비인도적 가치의 주장 등)이나, 윤리적 위반(이중 게재, 중복 활용, 무임승차, 연구 성과에 대한 부당한 점유 등), 그리고 법적 위반(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등) 등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봐야 한다는 것이 있다. 둘째, ‘풀어쓰기’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한 결론으로서, 표절은 표현의 복제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독창성에 근거한 내용의 고유함을 따진다는 점도 중요한 원칙이다.

실제 표절 시비에 걸린 사례를 보면, 이런 원칙들을 적용하더라도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연구윤리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종합자료실 자료 중, 표절의 경계(<http://www.cre.or.kr/article/multimedia/1383087>)란 게시물이 있다. 이 게시물은 한국연구재단이 제작한 것으로서, 다음 4가지 사례를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

- (가)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초록의 도입부, 결과, 토론 등에서 문장을 일부 옮겨온 경우이다. 저자는 일부 문구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내용과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다른 연구자의 서론의 일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온 경우이다. 저자는 서론 일부를 그대로 썼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변명한다.
- (다)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대부분 문장을 옮겨 온 것이 확인되었지만, 저자가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모델로 연구를 진행했을 뿐 연구 대상과 연구 결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저자는 동일한 표현을 쓴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일

반적 설명에 속하는 것이라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 표절 판정을 받을 정도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자는 핵심어, 연구대상, 연구방법이 거의 같을 뿐 실험결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저자는 또한 일부 표현이 다른 저작물과 유사한 이유로 그 표현 자체가 논문작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4 사례가 담고 있는 문제를 분석적으로 정리해 보면 (가) ‘같은 표현, 다른 내용’ 주장, (나) ‘같은 표현, 일반적 내용’ 주장, (다) ‘같은 표현, 일반적 방법론’ 주장, (라)는 위의 (가)와 (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즉 ‘같은 표현, 다른 내용’과 ‘같은 표현, 일반적 내용’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별도의 주장은 아니다. 일단 4 사례들은 모두 저자의 글이 다른 저자의 글의 표현과 같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지만,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흥미롭게도, 위의 주장 모두 표절 판정에 ‘표현의 복제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이용해서 변명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표절 판정의 2번째 원칙은 ‘표절은 표현의 복제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독창성에 근거한 내용의 고유함을 따짐’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을 활용해서 ‘표현의 복제를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주장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가) 같은 표현, 다른 내용: 일부 글의 표현은 다른 글과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내용이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는 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누구든 표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표절이 문제 삼는 가치란 잠재적 독자에 대해 ‘이 글은 저자의 고유한 생각을 담고 있을 뿐, 다른 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표현이 담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주장이 입증되면 역시 표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표현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경우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하나의 상투적이거나 관용적인 표현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건이 표절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구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음 두 조건이 그러하다.

첫째, 시적 표현과 같이 표현 그 자체가 내용인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표현, 다른 내용’이라는 주장을 적용하기 어렵다. 고유한 표현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문학의 경우에는 ‘같은 표현, 다른 내용’이란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고유한 표현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공계에서는 이 주장이 통하는 경우가 더 잦을 것이다.

둘째, 그의 의도, 맥락, 효과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같은 표현’의 양이 너무 많다면,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이 조건은 개별적인 표절 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표절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저자가 ‘표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같은 표현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주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나) 같은 표현, 일반적 내용: 이 주장 역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상식에 가까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누구도 표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분야에 알려진 주장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언론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어떤 저자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표현을 인용 없이 제시했다고 해서, 누구도 그가 맥클루언(McLuhan)의 <미디어의 이해>란 저작을 표절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메시지다’는 표

현은 언론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초심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어떤 저자도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생각인 것처럼 포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표절이 될 수 없는 표현이 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신은 죽었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정치학자가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쓰거나 방법론 논문에서 ‘반증가능성’ 개념을 인용 없이 사용한다고 해서, 마르크스와 포퍼를 표절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반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영역별로 규정된다. 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인용 없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표절의 의혹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듯이 언론학 분야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는 표현을 인용문 없이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 될 수 없지만, 언론학과 거리가 먼 물리학 분야의 연구자가 다른 동료 연구자들에게 매체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이 표현을 인용 없이 사용한다면 표절이라고 간주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다) 같은 표현, 일반적 방법론: 방법론은 이론적 성과보다 더 기초적인 지식 체계로 간주되며, 따라서 개인이 개발한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학술공동체의 공동 자산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누구도 미분법을 사용하면서, 뉴턴을 인용하지 않는다. 누구도 실험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흡을 인용하지 않는다. 분과학문에 있어서도 연구방법 중에는 해당 분야의 패러다임 수준의 공유자산으로 간주되는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방법론을 사용해서 독창적인 논문을 쓰는 일은 사실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방법론도 새롭게 개발된다. 어떤 창의적 연구자의 독자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학문에 고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고유한 기여를 하는 방법론이란 안정적이며 타당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론이라고 해야겠지만 (즉 방법론의 타당성이 중요하지, 독창성이 요점이 아닌 것 같다), 방법론의 미덕이 무엇이든 고유한 방법론이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다른 연구자가 개발한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그 방법론의 개발자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표절의 경계에 다가 선 것이다. 진지한 연구자라면 이론의 개발만큼이나 연구방법론의 개발도 중요하며, 방법론이 고유한 학술적 기여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알면서, 다른 연구자의 고유한 방법론을 인용 없이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제시한다면 표절이 된다.

위의 세 주장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개의 추가적인 표절 판정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표절 판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표절 판정은 일반적 원칙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일반적 지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고유한 학술적 가치의 창조라고 간주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또한 소위 전문가의 안목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제기된 표절 시비를 연구자간 경쟁이나 질투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해당 분야의 학문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현명한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표절 판정을 위해서는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되는 글의 내용적 고유함, 표현의 일반성, 방법론의 일반성 등을 판정하기 위한 배경적 지식을 요구되는데, 이런 지식은 학문 분

야 또는 글쓰기 분야 별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내용이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한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방법론이 다른 분야에 적용되어 새로운 방법론적 기여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절 여부에 대한 결정은 분과 학문 분야 또는 글쓰기 분야 별로 제기되고, 조사되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표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표절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일은 어렵지만, 뜻밖에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용하면 된다. 이 절에서는 표절과 인용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피해 갈 수 있는 표절이 현실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 문제가 저자의 본원성(authenticity)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표절을 저자의 본원성과 연관시켜 보아야 표절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처 방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원성 개념을 적용해 보았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학생의 표절’이다. 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해 보자.

##### 1) 표절을 극복하는 법: 정당한 인용

표절을 미워해서 모든 모방을 적대시해서는 곤란하다. 어떤 저자라도 다른 저자의 저술로부터 배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어떤 작가라도 다른 작가의 글에서 영향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다른 연구자로부터 배우지 않은 연구자는 진정한 연구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학습과 영향력의 과정에 ‘생각의 모방’이 없을 수 없다. 한 작가가 다른 작가의 생각을 모방하여 배우는 일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가피하다. 사실을 말하자면, 습작 단계에서 근면하고 정확하게 다른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모방해 본 경험이 없는 작가는 창의적 작가로 성장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예술과 학술분야에서는 심지어 적절한 수준의 모방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는 훌륭함을 증명할 수 없다. 예컨대, 예술에서 창작 기법의 습득과 과학에서 방법론의 활용은 흔히 모방과 창조적 수용의 경계를 넘나든다.

모방을 적대시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편향이며, 심지어 과도한 편향이어서 편파적이라고 할만하다. 나는 이른바 ‘창조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며, 그것은 좋은 것이며 따라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창의적인 블루스 연주자에게 물어 보라. 그가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연주자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보면, 저자의 목표는 다른 위대한 작가의 생각을 배우고 활용하되, 표절이라고 지탄받을 만한 정도로 무리하게 베껴내지 않는 것이 된다. 얼핏 ‘모방하되 표절하면 안 된다’라는 격률은 모순적으로 들리며, 심지어 부도덕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학술적 글쓰기에서 이는 전혀 어렵지 않다. 정당하게 인용하면서 글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표절을 피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정당하게 인용하면서 글쓰기 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표절 예방의 요점은 ‘정당하게 인용하면 아무리 모방하거나 복제해도 표절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 있다. 특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표절이 염려스러우면 그 때마다 원저자를 찾아서 인용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실로 정당한 인용을 통해서 다른 저자의 생각을 활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는 일은 연구자의 미덕에 속하지 그 반대가 아니다. 너무 인용이 많은 나머지 저자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문제가 된다. 나를 독창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줄기 때문이다.

정당한 인용은 ‘표절 예방’의 차원에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인용이란 본디 저자가 다른 저자와 관련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저자성(authorship)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저자는 인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연구 전통에서 어떤 저자들의 성과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또한 자신이 어떤 연구 전통에 속하는지 자인하게 된다. 인용은 저자가 원저자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일이며, 때로 저자 자신의 학습 성과를 과시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고유한 기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무엇이 오래된 생각이고, 무엇이 새로운 생각이며, 자신은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용은 이를 위한 장치인 것이다. 연구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이기 위해서 인용의 목적, 전략, 방식 등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용을 잘 하다 보면 표절에 대해 따로 염려할 일이 없다. 결국 표절 방지를 위한 교육이란 곧 어떻게 잘 인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표절을 범하면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 위협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체계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창조적 모방’을 거쳐서 ‘독창적 저술’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격려해야 한다.

## 2) 본원성의 역설

본원성(authenticity)이란 자신의 본성, 배경,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충실함을 의미한다(Taylor, 1991). 이를 글쓰기에 적용시키면, 본원적인 글쓰기란 자신의 본성의 모든 강점과 약점, 그리고 출신과 배경의 좋음과 나쁨을 드러내고, 반성하며, 극복하는 글쓰기라고 하겠다. 본원적이지 않은 글은 의혹을 자아낸다. 예를 들어, 어떤 저자가 자신의 집합적 정체성을 집요하게 감추거나, 그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극복한 글쓰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진다.

모든 글은 저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함축한다. 글이란 내용을 전달하는 동시에 저자에 대한 정보와 추론의 근거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독자는 어떤 글을 접하면서 누구의 글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 누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한 추론이 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거나와 저자와 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낳기도 한다. 저자에 대한 추론은 독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이는 심지어 익명의 저작이나 작자 미상의 저작을 읽을 때에도 적용된다.

본원성은 개념적으로 진정성과 연관된다. 본원성은 진정성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자신의 본성과 배경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작가로부터 어떤 진정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해 보면, 비본원적 글쓰기를 하면서 진정함을 주장하는 것은 우습다. 이는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성실하게 사는 것과 같다.

비본원적인 글쓰기가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본성과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 위해 글을 쓴다. 또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아닌 변명과 부정을 위한 글쓰기가 있다. 앞서 나는 본원적이지 않으면 진정해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비본원적인 글쓰기는 위선적인 글쓰기가 되기 쉽다. 저자가 자신의 본성과 배경을 숨기거나,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본성과 배경을 배신하는 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술 공동체를 비롯한 이른바 글쓰기 공동체가 이런 글쓰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본원성이란 개인의 인정, 결단, 선택과 관련된 것인데, 개인이 본원적 자아를 인정하

지 않는다고 해서 글쓰기 공동체가 비윤리적이라고 시비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절은 비본원적 글쓰기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저자,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싶은 저자, 그리고 그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가 부끄러운 저자가 표절 작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본원적이지 않으며 진정하지도 않으면 심각해진다. 자신이 쓰고 싶은 것 또는 써야 할 것을 쓰지 못하고, 남이 바라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글쓰기다. 이런 글쓰기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소외시키는 일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저자의 탄생과 관련된 일이다. 한 사람의 저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습작기가 필수적이다. 습작기 저자의 능력과 스타일이 지양되면서 저자가 탄생한다. 글쓰기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개인의 글쓰기 능력과 스타일은 변화하고 또한 발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본원적인 단계를 거친다. 요컨대, 저자는 성장의 한 단계에서 자신의 본성과 배경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한계로부터 탈주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는 모든 훌륭한 저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생각해 보면 이는 정신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이런 탈주의 본능은 비본원적 경험을 만들어 내면서, 또한 자아를 확장하는 도정을 겪은 후 더욱 풍부한 정신으로 돌아온다. 변화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며, 스스로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을 초월해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낸다. 본원적 저자란 그런 것이다. 반성적 자아의 여정을 통해서 탄생한다. 자신의 본성, 배경, 정체성에 충실하지 않은 단계를 거친 정신이 그 배반의 경험을 스스로의 새로운 출신, 배경, 본성의 일부로 만들어 본원적이 된다.

나는 대부분의 저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 훌륭한 저자가 된다고 믿는다. 저자는 다른 저자에 대해 강하게 끌리어 그 자신의 본성, 배경, 정체성을 잃고 그를 배우고자 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킨다. 생각해 보면, 모든 학습은 어느 정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술에서 기예를 익히거나 글쓰기의 스타일을 익히는 과정이 특히 그러하다. 이미 견습과 학습을 마친 본격적 저자의 경우라도 새롭게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 다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진정 본원성을 실현하는 저자란 다른 이를 배우다가 그 자신의 고유함을 깨닫게 된 저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그는 자신으로부터 탈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 뒤, 다시 그 본원적 근거로 돌아온 저자이다. 완성된 본원성이란 회복된 본원성인 것이다.

이렇게 본원성을 이해한다면, 표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저자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에게만 충실해서는 변화와 발전이 없다. 표절은 성장하는 저자 또는 변화하는 저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가운데 빚어지는 무리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운동선수, 세계적인 학자처럼 보이고 싶은 대학원생, 유능한 작가가 되고 싶은 무명의 작가가 표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유혹은 모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저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표절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안정된 자의 일탈이 아니라 안정된 정상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도된 노력이다.

### 3) 학생의 표절

본원적 저자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학생의 표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유한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독창적 저술 주체로 인정받는 본격 저자의 경우 언제나 독자에

대해 진정해야 할 것을 요구받으므로 그가 표절을 범하는 경우 윤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전문적 저자가 아닌 경우에도 스스로 독창적인 저자임을 주장하고 나섰다면 자신이 범한 표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전문적인 저자로서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또는 스스로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이른바 훈련 중에 있는 저자의 표절은 어떻게 되는가?<sup>12)</sup>

독창적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저자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역시 표절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독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자에게 저작성에 대한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흔히 덧없는 일이 된다. 비유하건데 이는 무능해서 의사면허를 받지 못한 자에게 의사의 윤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독창적이지 못하면 진정해봐야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른바 훈련 중인 저자의 표절, 즉 학생의 표절 역시 표절이지만, 그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학생의 표절은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지 윤리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 학생의 표절은 교육적으로 지적되고, 확인되고, 교정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좋은 선생이라면 자신의 학생이 배우지 못해 무지한 자로 남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선생은 학생이 표절이 뭔지 몰라서 표절 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무지한 자에게 진정해야 한다고 가르쳐 봐야 흔히 덧없는 결과만 초래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선생이라면, 표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역시 먼저 글쓰기 교육에 전념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견지에서 보면, 학생이 모르고 범한 표절은 제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물론 모르고 표절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선생을 속이겠다고 표절할 수 있다. 나아가 세상을 속이겠다고 표절을 감행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어쩌랴.

## 5. 표절에 대한 이해

이 글에서 나는 표절을 독자에 대한 진정성 위반으로 개념화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이해했을 때 표절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윤리적 문제들과 구분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제시했다. 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절은 다른 저자와의 관계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된 독자의 기대와 관련해서 규정되어야 옳다. 표절은 요컨대 다른 저자의 내용을 가져다 씌으로써 독자가 다른 저자의 내용을 그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글쓰기이다. 여기에서 오해는 예상된 독자가 창작물을 접하면서 갖게 되는 기대, 즉 그 내용이 다름 아닌 저자 자신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는 기대를 위반하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표절은 원작자의 저작물의 표현의 복제 여부를 따지는 저작권과 다른 것이며, 또한 사실상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와도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둘째, 표절과 관련된 가장 흔한 오해는 ‘풀어쓰기’를 하면 표절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이다. 표절은 표현의 복제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고유함을 따지기 때문에 풀어쓰기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절과 관련해서 흔히 제기되는 ‘어떻게 그리고 얼

---

12) 윤리적 책임의 부여와 관련해서 ‘훈련 중인 저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나는 박사논문 완성 이전 단계의 학생을 ‘훈련 중인 저자’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대학을 포함한 학술세계의 일반적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사 학위란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박사 학위를 포함한 이후의 저작의 충실성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나 복제해야 표절인가'라는 질문은 요점을 잃은 질문이 된다. 내용적으로 저자가 원작자의 생각을 인용 없이 옮겨다 쓴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옮겨다 썼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표절 판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표절은 일반적 원칙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판단인데, 이런 판단에는 해당 분야의 일반적 지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고유한 학술적 가치의 창조라고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된다. 표절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지식은 학문 분야 또는 글쓰기 분야 별로 고유한 지적 전통을 배경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표절은 비본원적인 글쓰기라고도 규정할 수 있다. 표절은 자신의 본성, 배경, 정체성을 배반하는 글쓰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저자,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싶은 저자, 그리고 그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가 부끄러운 저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이 있다. 대부분의 저자는 다른 저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함을 저버리고 어떤 다른 주체로 성장하려 하는데,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과정적으로 비본원적인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요점은 학생의 표절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 글의 주장과 긴밀히 연관된다.

다섯째, 학생의 표절은 교육적 견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흔히 학생은 고유한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독창적 저술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의 저작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독창성이 없는 저자라 할지라도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의 표절도 성립하며 또한 윤리적 위반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학생의 표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윤리적 제재를 가하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적 견지에서 창의적 글쓰기와 인용하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글쓰기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창의적 저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표절에 대해 관용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절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대해 고려해 보자. 이 문제 역시 진정성 위반의 견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진정하지 않은 화자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믿지 못할 사람, 즉 나쁜 사람이 되기에 그렇다. 표절은 일종의 '진정성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 역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일탈(moral transgression)은 윤리적 위반(ethical breach)의 필요조건이며, 표절은 학술 공동체가 염려하는 저술 관행이기에 당연히 학술 공동체 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위법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그것은 저절로 심각한 윤리적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sup>13)</sup> 생각해 보면, 진정성 위반은 주로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낼 뿐 '헤로운 행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글쓰기와 관련해서 헤로운 행위란 흔히 표절과 다른 문제로,

---

13) 비교하자면, 학술 공동체에서 표절보다 훨씬 심각한 윤리적 위반 중에 위조(fabrication)가 있다.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보고의 위조, 실험 결과의 위조, 분석 결과의 위조 등은 심각한 학문적 성실성 위반이다. 위조는 단순히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속이는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해당 분야의 학술적 규범과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실함과 진정함의 추구를 가로막으며, 결국 그런 가치에 기반한 학문 제도 자체에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학생들의 윤리적 위반에 대해 관용적인 대학에서조차 위조와 관련해서는 절대 관대할 수 없다. 요컨대 학술적 윤리 위반 중에도 경중이 있다. 위조와 같은 문제는 표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심각한 학술적 위반이다.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 진정성 위반이 위법한 행위 또는 심각한 윤리적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점검하고, 분석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표절자는 일단 글쓰기 공동체에서, 즉 대학이나 연구기관, 문인 사회, 취향의 공동체에서 ‘진정하지 않은 자’로서 오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쁜 저자로 알려진다. 혹자는 표절을 범한 대가로 단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나 ‘오명을 갖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다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간주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까.

## 참고문헌

- 남형두 (2009).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54, 32-68.
- 이일호, 김기홍 (2009). 역사적 관점에서 본 표절과 저작권. *법학연구*, 19 (1), 309-344.
- 정상조 (2003).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4 (1), 107-140.
- Gibaldi, J. (2003).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6th ed.).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and J. L. Morgan (Eds.), *Speech acts* (pp.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olsinger, R. L. & Dilts, J. P. (1994). *Media law. 3rd Ed.* New York: McGraw-Hill.
- Huff, A. S. (1999). *Writing for scholarly publication*. Thousand Oaks: Sage.
- Lipson, C. (2004). *Doing honest work in college: How to prepare citations, avoid plagiarism and achieve real academic successes*. 김형주, 이정아 역 (2008). 정직한 글쓰기. 서울: 멘토르.
- McCafferty, M. F. (2001). *Sloppy firsts*. Broadway.
- Netanel, N. W. (1999). Copyright and democratic civil society. *Yale Law Journal*, 106 (2), 283-398.
- Posner, R. (2006). *The little book of plagiarism*. 정해룡 역 (2007). 표절의 문화와 글쓰기의 윤리. 부산: 산지니.
- Strunk Jr. W., & White, E. B. (1979). *The elements of style* (3rd ed.). New York: MacMillan.
- Talyor, C. (1991).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he Sociology Writing Group (1994). *A guide to writing sociology papers*. (3rd ed.). New York: St. Martin's.
- Viswanathan, K. (2006). *How Ophal Mehta got kissed, got wild and got a life*. Little Brown.